

[별표 5]

생산자등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준(제49조 관련)

| 검 사 조 건 | 검 사 기 준 |
|--|--|
| 1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결과 규격표시품이 그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반규격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◦ 허위표시에 관한 경위규명 |
| 2.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확인검사만을 실시 |
| 3.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에 관한 검사만을 실시 |
| <p>4.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</p> <p>가. 공장이 이전된 경우</p> <p>나. 생산시설이 50%이상 확장 또는 축소된 경우</p> <p>다. 규격의 개정내용이 상향조정된 경우</p> <p>라. 주요원자재가 변경된 경우</p> <p>마. 공장의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조설비,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◦ 제조설비,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◦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. 다만, 규격개정の内容이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수준 및 생산시설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품의 품질 검사를 생략함 ◦ 자재의 품질,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◦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|
| 5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시 사료채취가 필요하나 중량물, 고가품으로서 그 채취가 곤란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|
| 6.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|
| 7. 재해등의 사유로 품질유지가 어려운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|
| 8.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 |